

계약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여자대학교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추정가격 : 물품, 공사, 용역 등 계약에 있어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으로 추정한 가격
2. 예정가격 :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해 둔 가액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과 규칙에 따르기로 한다.

제4조 (계약의 원칙)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규정 또는 관련법령에서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예정가격의 비치)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 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예정가격의 산출) ①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1. 시장조사 및 물가조사 가격
2.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 실례가격
3. 정부 고시가격이 공시된 물품은 정부 고시가격

② 공사, 제조, 구매 및 용역의 경우 관계법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원가를 계산,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수입물품의 구매원가에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2. 통관료
3. 보세창고료
4. 하역료
5. 국내운반비
6. 신용장 개설 수수료
7. 일반관리비(법정비율)

제7조 (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사무처장 임회하에 재무팀장이 실시하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제8조 (현장설명과 공사) ① 공사의 현장설명은 규모에 따라 당해 입찰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이상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30일 이상

② 공개경쟁입찰을 한 경우 낙찰자에게 설계서, 공종별 물량내역서 및 동 물량에 대한 단가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설명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제9조 (부대입찰) 공사입찰을 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입찰금액을 구성하는 공사 중 하도급할 부분, 하도급금액 및 하수급인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케 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입찰자 또는 입찰 횟수에 제한받지 않고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1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서를 작성(사유를 입증할 증빙첨부) 기관의 장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
2. 임대인 경우 연액, 또는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총액기준 2천만원 이하
3. 관계법률에 의할 경우 즉 산업표준화법, 광공업규격표시 물품 또는 품질경영촉진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등

제12조 (입찰공고 및 시기) 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일 또는 개찰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에 행하여야 한다. 공사의 경우는 현장설명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는 개찰일 5일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입찰공고는 일간신문, 학보, 입찰광고전문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지 구내게시판 공고로만 할 수 있는 경우;

1. 공사의 경우 : 3억원 이하
2. 물품제조의 경우 : 1억원 이하
3. 물품구매, 용역, 기타의 경우 : 5천만원 이하

제13조 (낙찰자결정)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금액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14조 (계약서의 작성생략)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없는 경우
4. 물품구매시 즉시 대금을 주고 인수하는 경우

제15조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은 다음에 의한다.

1. 공사 : 계약금액의 10/100
2.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시스템 구축 등) : 계약금액의 10/100
3. 대형공사의 경우 : 10/100이상

제16조 (검사) ① 검사는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검사조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1.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 매각 계약의 경우

3.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의 경우

제17조 (대가의 지급) ① 대가의 지급은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연장된 검사기간은 이 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③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적어도 90일마다 지급할 수 있되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④ 청구내용이 부당할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18조 (하자검사) ①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예정가격의 88/10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는 전문기관에 하자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하자검사조서를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④ 2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검사조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 (견적서 제출요구) ① 견적서는 아래와 같이 제출해야 한다.

1. 수의계약 및 30만원 초과인 경우 : 2인 이상

2. 30만원 이하 : 견적서 제출 생략

제20조 (보증금의 납부) 보증보험증권으로 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입찰보증금 :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

2. 계약보증금 : 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종료 60일 이후

3. 하자보수보증금 : 준공검사일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후 60일 이상

제21조 (선금의 지급) ① 선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70/100 범위내에서 다음 요령에 의한다.

1. 적용범위 :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공사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제조, 용역

2. 지급할 수 있는 선금 : 공사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20/100

” 20억원 이상 25/100

” 20억원 미만 30/100

물품의 제조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 20/100

” 3억원 이상 25/100

” 3억원 미만 30/100

②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계약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납품 또는 공사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선급할 수 있다.

제22조 (계약담당자) 본 대학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계약담당자는 총장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된다.

제23조 (직영공사)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영공사를 할 때에는 작업일지와 자재수급부, 노임지급명세서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집행관리 및 감독은 이를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 (조서작성생략) 검사조서의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 매각계약의 경우

3. 전기, 가스, 수도 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규정 전에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규정에 따라 처리 된 것으로 간주한다.
- (3)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규칙과 정부예산회계법 및 그 시행령을 준용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6조 ①항 신설 <'00 제9차 교무위원회>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3조 개정 <'05 제13차 교무위원회>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7조 개정 <'09 제26차 교무위원회>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개정 <'09 제26차 교무위원회>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5조 개정 <'14 제28차 교무위원회>회>)